

2017년 행정심판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17. 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I. 출장 개요	1
II. 방문기관별 연구내용	5
1. 캘리포니아 州정부 행정법사무소	5
2. 샌프란시스코 市정부 행정심판위원회	10
3. 미국 聯邦정부 사회보장국	24
4. 로스앤젤레스 市정부 사회보장국	33
5. 미국 聯邦정부 사회보장국 행정심판사무소	41
III. 시사점 및 향후 계획	49
〈참고자료〉	51
1. OAL 법령검토 절차	51
2. OAL 입법 절차	53
3. BOA 심판청구사건 현황	57
4. BOA 소송사건 케이스	60
5. LA 시정부 행정 절차	66

I 출장 개요

□ 출장 개요

○ 출장국 및 방문기관

출장국	방문 기관
미 국 - 새크라멘토 -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사무소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 샌프란시스코시 행정심판위원회 (The Board of Appeals of San Francisco) • 聯邦정부 사회보장국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로스앤젤레스시 사회보장국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 • 聯邦정부 사회보장국 행정심판사무소 (Office of Disability Adjudication and Review)

○ 출장기간

- 2017. 4. 12.(일)~2017. 4. 21.(금), 7박

○ 출장자

- 이상민 부위원장
- 유현숙 과장(사회복지심판과)
- 최해일 사무관(행정심판총괄과)
- 이효정 검토위원(사회복지심판과)

○ 방문일정

일자	방문기관	면담 내용
4.13.(목)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행정절차법 제정 및 운용, 각종 행정 불복절차 및 권익구제 제도 현황
4.14.(금)	The Board of Appeals of San Francisco(BOA)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및 소속 카운티 기타 단체가 행하는 허가, 인가 기타 사용권의 수여, 거부, 중지, 취소 및 변경 등에 대한 제반 불복 구제 절차 현황
4.17.(월)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미국 聯邦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보전적 소득보장제, 사회보장 장애보험제 등) 및 운영 기관 현황, 불복제도(다심제) 전반 연구
4.18.(화)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DPSS)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사회보장 제도(경제, 복지, 건강 등) 현황 및 제반 불복절차 조사
4.19.(수)	Office of Disability Adjudication and Review(ODAR)	미국 聯邦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청문절차, 연방행정법 판사(ALJ)의 역할 등

□ 출장 목적

- 행정 불복절차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심급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미국의 행정심판 등 행정불복 제도·실무 연구
- 심급제 등 '17년 연구용역 과제, 최근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복지 행정 관련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사
- 미국 聯邦정부/州정부/市정부, 제도총괄/실무운영 기관과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 도시 및 기관선정 이유

-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규모만으로 세계 6위권 국가수준에 이르며, 인구수는 약 4천만 명으로 미국 50주 중에서 가장 많아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경제 블록으로서 조사·연구 대상으로 적합
- 첫 번째 방문도시인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州都이고, 두 번째 방문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사실상의 경제 중심도시이며, 마지막 방문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사회복지 행정분야에서 세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선정
- 5개 방문기관은 기관의 지위, 업무분야 등을 고루 안배해 제도·실무 전반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선정

□ 기관방문 내용

- 미국 행정불복 및 구제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소개
- 심급제, 청문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출장단 사전 점검회의

방문기관 현황, 질의·응답 항목 등에 대해 공유·토론



II 방문기관별 연구 내용

1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사무소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1.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사무소 개관

□ 개요

- 소재지 : Plaza 555,300 Capitol Mall #1250, Sacramento, CA 95814
- 설립일 : 1980. 7. 1.
- 책임자 : Debra M. Cornez(국장)

□ 업무

○ 주 소속 행정기관 법령(agency regulation)의 검토

- 행정기관의 법령이 명확하고, 필요하며, 법적으로 유효하고, 공공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감독기관의 역할 수행
- 주의 행정기관(220 곳 상회)이 수립한 하위법령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동 법령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송부함
 - ※ 군(county)과 같은 지방기관의 규정 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음
 - ※ 해당 기관의 법령 수립권 보유 여부,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 기술의 명확성, 여타 실제 및 절차법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법령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및 관보(Notice Register) 발간

- 캘리포니아 법령집 및 관보가 서면과 인터넷으로 발간·배포
 - ※ 현재 60,000개를 넘는 법령 존재
 - ※ 관보는 입법 예고와 기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통지 등 주1회 발간

○ 입법 관련 교육 및 지원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관들이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변호사 서비스(Reference Attorney Service)를 통해서 주의 기관이나 공공에게 입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조언

○ 비공식 법령(underground regulations) 신고 수리 및 조사

- 이해관계인의 신고(petition)를 받아 어느 기관의 규칙이나 정책, 절차가 행정절차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공식 법령(underground regulations)’에 해당되는지 판정하기 위한 법적 분석을 행함

※ 비공식 법령이란?

주의 기관이 수립한 법규로서 행정절차법상 법령의 정의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의 절차를 따라 수립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그 절차가 면제되지도 않은 것을 말함

2. 기관방문 내용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17. 4. 13.(목) 10:30 ~
- 장소 : OAL 내 컨퍼런스룸
- 면담자 : Debra M. Cornez(Director of the Office)
- 면담내용
 - 캘리포니아州政府 차원의 행정절차법 제정 및 운용 현황
 - 각종 행정 불복절차 및 권익구제 제도 현황
 -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현황 및 성과 소개

□ 문답 내용

1. 귀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행정기관이 제정한 하위법령(agency regulations)이 행정절차법상 절차상·실체상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 ① 캘리포니아에 이러한 기관은 귀 기관 1개인지
- ② 위 행정절차법은 연방법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행정절차법이 따로 있는지
- ③ 행정절차법상 ‘실체적 기준’ (substantive standards)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2. 행정절차법에 ‘일반 입법절차’ (Regular Rulemaking Process)와 ‘긴급 입법절차’ (Emergency Rulemaking Process)가 규정되어 있는데,

- ①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 ② 양 절차가 이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③ 긴급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령도 효력이 동일한지

3. 행정법령이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 해당 법령에 대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기관의 구체적 결정 외에 법령 자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4. 하위법령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하는데 국무장관은 누구를 지칭하나

5. 귀 기관은 입법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Reference Attorney Service) 제도를 운용함

① 변호사는 상근인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가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인지

② 기관 및 일반인의 서비스 이용 절차 등 업무운영 현황

6. 비공식 법령(Underground regulations)이란 무엇인지?

- 귀 기관의 관련 업무 소개

□ 기타 사항

-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법제처 등 관련기관 현황, 각종 행정불복 절차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OAL 관련 자료를 수령

3. OAL 시사점

□ 우리나라 행정불복 제도 수립·운영 관련

- 일부 규제적 성격의 제반 행정불복 제도들이 최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통해 법 전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 각종 법률검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규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기간제, 재택근무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충원해 활용

□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관들이 행정 절차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변호사 서비스(Reference Attorney Service)를 통해서 주의 기관이나 공공에게 입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조언

※ OAL 방문 모습



2

샌프란시스코 행정심판위원회
(The Board of Appeals of San Francisco)

1. 샌프란시스코 행정심판위원회 개관

□ 개요

- 소재지 : 1650 Mission St#304, San Francisco, CA 94103
- 설립년도 : 1932년
- 위원장(President) : Darryl Honda, 부위원장 : Frank Fung

□ 업무

- 샌프란시스코 헌장(Charter)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body)
 - 샌프란시스코 시 및 소속 군(county)의 각 부서, 위원회, 기타 단체가 행하는 허가, 인가, 기타 사용권의 수여, 거부, 중지, 취소 및 변경 등 광범위한 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 최종적인 행정적 검토를 수행함

□ 위원회 회의 및 구성원

- 회의는 시청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개최
 - 공개로 진행되며, 시정부TV 등을 통해 방송됨
 -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진행
 - 회의 주제, 회의록 및 보충서면, 사건 관련 기타 자료 웹사이트 공개

※ 2016년 위원회 활동 : 개최 회수 29회, 회의 시간 100시간

- 5명의 위원 중 3명은 시장(Mayor)이, 2명은 감사단의 장(President of the Board of Supervisors)이 임명

- 위원 임기 : 4년(감사단 승인 필요)

※ 위원 현황

명 단	직 위	임명권자	임명일	임기만료일
다릴 혼다	위원장	시장	2012. 12. 4.	2020. 7. 1.
프랭크 핑	부위원장	시장	2004. 10. 19	2020. 7. 1.
앤 라자러스	위원	시장	2012. 7. 25.	2018. 7. 1.
릭 스위그	위원	감사단	2015. 4. 2.	2020. 7. 1.
바비 월슨	위원	감사단	2014. 9. 30.	2018. 7. 1.

□ 관할

- 샌프란시스코 헌장 4조 106(b)항

- 허가 및 인증이 거부되거나, 유예, 취소, 철회된 자, 또는 허가 및 인증의 수여, 거부, 유예 또는 취소에 따라 개인 및 공공의 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함

- 헌장에서 관할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시 법령에 따라 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있음

※ 다른 시 법령에 따라 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사항

- 일정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들
- 역사보존위원회가 발급한 유용 허가증
- 건축조사부서가 평가한 개발부담금

- 시의 다른 부서나 단체와 체결한 MOU에 따라 행정심판 수행

예) 위원회와 항구위원회는 항구와 관련된 위락시설의 허가를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합의

□ 사건의 종류

- 심판청구(appeals)

- 기관이 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 관할요청(jurisdiction requests)

- 처분청의 오류로 인하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청구기간 도과 후에도 심판청구 허용

예) 도시계획 법규에 따라 건축계획에 대한 이웃주민 통지가 필요한 경우, 동 통지가 작업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주소에 송달되지 못한 경우 시 측 오류 인정

<2016년 관할요청 17건>

11건 기각, 5건 취하, 1건 심리일정에 따른 계속, 인용 없음

- 재심요청(rehearing requests)

- 위원회의 심판사건 결정 후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결정의 재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유 : ① 명백한 부당함(manifest injustice)의 방지, ② 위원회 원결정의 결과(outcome of the original hearing)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 발견(위원회 규칙 5장 9(b)조)

<2016년 재심요청 15건>

12건 기각, 1건 인용, 1건 철회, 1건 연말 계류

□ 위원회 사건 현황 (2016년)

총 건수	신건		전연도 이연
296	257	225 (심판청구)	39
		17 (관할요청)	
		15 (재심요청)	

□ 위원회 사건 심리 현황 (2016년)

총 건수	심리		불심리		
296	193	168 (심판청구)	103	47 (취하)	
		13 (재심요청)		46 (계류)	
				12 (관할요청)	* 연말 청구되어 다음해 심리
					6 (각하)
					4 (반려)
			* 관할 결여		

□ 심판청구사건 처리 결과 (2016년 총 168건)

건수	비율	결과	비고
124	74%	기각	심판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
9	5%	기각	자동 기각(denied by default) 인용 또는 기각하기에 충분한 의결수를 확보하지 못함
11	6%	인용	원결정 전부 취소
17	10%	일부 인용	원결정의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인용
7	5%	기타	5건 : 청문 후 계속 중 1건 : 재심요청에 따른 청문이 예정되어 연말 계류 1건 : 청문 후 위원회 결정 전 허가가 취소되어 각하

□ 사건의 분야

- 2016년 위원회가 심리(청문개최)한 168건의 심판청구사건 중 76%는 건축조사부서, 도시계획부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역행정관 또는 역사 보존위원회에 의한 토지 이용결정과 관련됨

- 주거지,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7건에 이름
- 5년간의 사건 현황을 보더라도 토지 이용문제가 가장 다수

□ 사건검토 기준 (Standard of Review)

- 대부분의 심판은 부서의 청문관, 위원회 등 결정권자가 내린 법적 결론 및 전제에 구애되지 않고 위원회가 새로이(de novo) 심리함
- 다만 캘리포니아 헌장은 구역행정관이 내린 일정한 결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동 행정관의 도시계획법규 해석의 오류나 재량권의 남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오류 및 재량 남용’ (error or abuse of discretion) 기준은 도시계획법규에 따라 몇몇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행정심판 절차

○ 근거법령

- 샌프란시스코 기업 및 조세 규제법(San Francisco Business and Tax Regulation Code)은 위원회 심판절차에 관하여 다수 규정함
- 예) 행정심판 청구 비용, 심판청구 시 인접주민 및 거주자에게 통지할 위원회의 의무, 결정이 유예될 수 있는 경우 등
- 심판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위원회 규칙(Rules of the Board of Appeals)에 규정되어 있음
- 특히 위 규칙은 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절차보장, 당사자와 일반인의 위원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지침을 규정함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예외) 구역행정관이 발한 제외결정은 10일, 역사보존위원회가 발한
사용허가증에 대한 심판은 30일
- 관할요청(jurisdiction request)으로 일정한 경우 청구기간 후 제출이
허용되기도 함

○ 증거 제출

- 심리촉진을 위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독려함
- 심판이 청구되면 증거제출을 위한 일정이 잡힘
- 위원회의 규칙은 증거의 길이 및 형식과 같은 다른 요건도 규정
- 당사자 아닌 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 제출 가능

○ 청문

- 서면 자료 검토 후 청문(public hearing)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선서와
이해관계자인 이웃주민 및 다른 일반인의 진술을 청취함

○ 의결

- 위원회는 숙고 후 인용(grant) 또는 기각(deny) 의결을 함
- 기각은 처분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 인용은 처분청의 결정을
전부 취소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임

<변경(modification) 결정 사례>

① 건축 계획의 변경

- 구조물을 변경하여 이웃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
- 이웃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차단막, 데크 등 설치
- 이웃면의 반투명 유리 설치
- 공사 시기 결정,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

② 담배판매, 마사지업, 택시운전 허가 등에 부과된 정지 기간(suspension)

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permit revocation) 대신 정지처분 부과

- ③ 음식판매 트럭의 판매종목 제한 및 영업시간의 변경
- ④ 무허가 공사에 부과된 벌과금의 변경
- ⑤ 벌목 후 대체식재 수목의 수나 규모 변경

※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의 일환으로 합의한 건축계획 및 다른
변경사항을 채택할 수 있음

- 심리계속 결정

추가 정보 제출시까지 또는 당사자간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계속 결정(기간 불특정도 가능)

○ 의결정족수

- 헌장은 심판 인용으로 처분청의 관련 결정을 취소, 변경하기 위
하여 절대과반수(vote of a supermajority of Board) 의결을 요구함
- 위원 전부 출석의 경우 5인 중 4명, 일부 출석의 경우 3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절대과반수는 ‘재심요청’이나 ‘관할요청’에도 적용됨
- 헌장이 아닌 다른 시 규정에 의한 심판(일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관한 심판)에서는 일반 과반수로 충분

□ 소송

○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2016년 위원회가 당사자가 된 5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고,
7건의 소송이 종결됨

□ 예산

- 위원회의 수입예산에는 2개의 원천이 있음
 - 95%는 허가신청에 부과된 부과금(surcharge placed on permit application)인데, 허가신청은 최근 심판청구 이력이 있는 유형임
 - 5%는 개인, 공동체, 사업체가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면서 납부하는 인지대(filing fee)임
- 2016년 상당수의 허가신청이 시에 제출되었고, 새로운 행정심판이 다수 제기되어 예산 초과 수입이 발생함
 - 위원회는 287,718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잉여수입 및 비용지출 감축에 따른 것임
- 매년, 재무담당관은 부과금 효율이 위원회 예정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분석함
 - 물가상승률을 넘는 필수조정은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입법절차를 필요로 함
 - 2016년에는 비용 감소와 현재의 효율이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재무담당관의 예측에 따라 별도 조정이 없었음
 - 실제 1,149,199달러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측액을 24% 상회한 것임

[표] 예측 및 실제 수입

	예측	실제	잉여금액(달러)	잉여율(%)
부과금 수입	882,567	1,063,449	180,887	20%
인지대 수입	46,037	85,750	39,713	86%
총 수입	928,604	1,149,199	220,595	24%

- 허가신청에서 비롯된 부과금 수입은 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됨
 - 최근 몇 년간의 경제호황으로 부과금 수입이 증가해 옴

- 인지대 역시 증가했는데 심판청구사건의 증가 그리고 신건 중 다수가 인지대가 높았기 때문임

※ 위원회는 2개 항목 모두 4년 연속 수입이 증가하는 흐름에 있음

- 지출 상세
 - 지출 예산은 사건처리 실적 및 출석 비용의 추산에 근거함
 - 전년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였는데, 임대료 및 은퇴자 복지혜택의 감소 때문임
 - 실제 지출은 예상치를 8.6%(81,219달러) 하회하였고 이는 몇몇 분야에서 감축 때문임

[표] 예산 지출 내역

금액(달러)	비율	비고
648,534	75%	직원 임금 및 복지비용
136,350	16%	다른 시 부서의 서비스, 예컨대 시 변호사 및 기술부서
29,761	3.5%	주민통지를 위한 주소 조회업체, 위원회에서 비영어권 주민을 위한 통역사와 같은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25,059	3%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전화 등 기반시설 비용
21,777	2.5%	물품과 공급품(주민 통지를 위한 우편비용 포함)
합계 861,481	100%	

□ 성과 평가

- 모든 시의 부서는 업무수행을 평가·기록하기 위하여 특별한 통계적 수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 위원회에 고유한 두 개의 지표는 ① 결정 기간 및 ② 서면 결정문 발급 기간임

- 지표 ① : 청구서 제출 후 75일 내에 결정된 청구건수
 - ※ 당사자가 조정 또는 추가 조사를 위한 계속을 요구할 경우 지연 발생
- 지표 ② : 최종 위원회 수행 후 15일 이내에 발급된 결정문 건수
 - ※ 1개의 결정에 대해 둘 이상의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재심요청이 그 중 1건에 있는 경우 위원회 결정은 최종 결과가 모든 관련 사건에 나올 때까지 보류되어 지연 발생

<2016년 달성율>

결정기간 충족 청구건수 : 68% (목표치 60%)

결정문 작성기간 내 발급건수 : 100% (목표치 97%)

2. 기관방문 내용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17. 4. 14.(금) 10:00 ~
- 장소 : BOA 소회의실
- 면담자 : 다릴 혼다 위원장, 프랭크 평 위원, 사무국장 등 4명
- 면담내용
 - 샌프란시스코 州정부 차원의 행정불복 제도 및 운용 현황
 - 세부 절차 및 각종 구제 사례
 -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현황 및 성과 소개

□ 문답 내용

1. 귀 시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행정 분야의 결정에 대한 일반적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① 미국의 다른 주·시도 유사한 행정심판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고유의 제도인지
- ② 행정심판을 운영하지 않는 주·시의 경우 행정결정에 불복하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2.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어떠한지,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상근으로 근무하는지
- 위원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척·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3.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처(staffs)의 조직이나 규모는 어떠한지

4. 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고, 케이블 티비 등으로 방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 ① 회의 전체가 공개되는 것인가
- ② 심리에 참석한 당사자의 privacy 침해 문제는 없는지

5.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청문)를 개최하는지, 서면으로만 심사하는 경우는 없는지

6. 재심요청(rehearing requests)은 ① 명백한 부당함(manifest injustice)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원 결정의 결과(outcome of the original hearing)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게 되는데,

- 명백한 부당함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 새로운 증거의 발견 시기는 위원회 결정 전·후와 무관한지
- 재심요청에 따라 동일한 구성의 위원회가 다시 심사할 경우 원래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제도의 실효성)

7. 심판청구 기간은 통상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데, 너무 짧지 않은지

8.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① 소송은 시민 측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시나 카운티도 가능?
- ② 소송의 대상은 원기관의 결정인지, 귀 위원회의 결정인지

9. 귀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나?

- 소송에 비하여 행정부 내의 심사가 시민에 유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비용, 기간, 심사기준 등)

□ 기타 사항

- 우리나라 행정불복 제도 전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련기관 현황, 각종 행정불복 절차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BOA 관련 자료를 수령

3. BOA 시사점

□ 우리 심판제도와 유사점

- 인허가, 거부, 중지, 취소 및 변경 등 다양한 행정분야의 결정에 대한 일반적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우리나라 시·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 중심의 제도 운영

□ 우리 심판제도와 차이점

- 위원들이 상근직이 아니며 자영업(건축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5명의 위원 중 3명을 시장이 임명
-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최되는데 완전 공개로 진행되며, 시정부 TV를 통해 일반에 방영
- 위원회의 결정 이후 합당한 사유(명백한 부당함,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결정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BOA 방문 모습



3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개관

□ 개요

- 심급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미국의 연방기구
- 본부 : Woodlawn, Maryland주 소재
 - 전국 현장사무소(Field Office) 개수: 1,300개
 - 방문 사무소는 Los Angeles에 위치한 15개의 현장 사무소 중 하나임
- 방문 사무소 소재지 : 11500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 근무자 수 : 총 62,000명

□ 업무

-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총괄하는 독립적 기관
 - 여러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청구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함
 - 노후, 장애, 유족급여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 총괄
 -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소득에 기반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주로 보장됨
 - 다만, 보전적 소득 보장 제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됨

□ 연방 사회보장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 ① 보전적 소득 보장제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대상: i) 장애가 있는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의 어른과 아동
ii) 장애가 없더라도 일정 소득 및 자산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 미국의 연방정부의 일반세금으로 운영되고, 추가적으로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7백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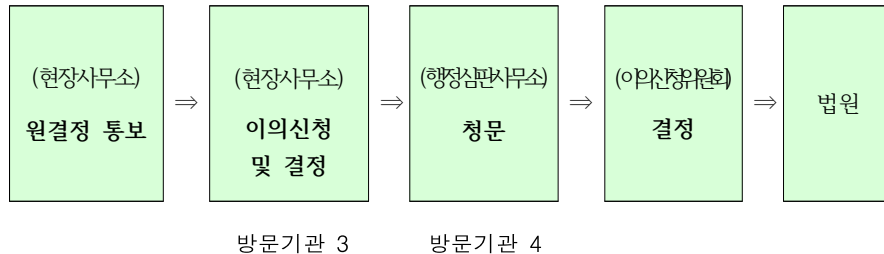
② 사회 보장 장애 보험제도(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제공
- 대상자: 보험에 가입하여야함. 즉, 일정기간 근로 및 사회보장 세금 납부 필요

③ 기타

- Survivors Planner, Retirement benefits, Medicare etc.

□ 연방 사회보장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① 결정의 통보

- 결정에 대한 설명을 당사자에게 통보

② 이의신청(File an Appeal)

- 1,300개의 연방 사회보장국 각 현장사무소에 신청

-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서면으로 신청해야함
- 온라인 신청 가능 :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appeal에 접수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consideration)

- 연방 사회보장국의 현장사무소에서 결정
-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
- 원처분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회보장국 담당자 담당
- 다만, 장애혜택결정에 관해서는 장애 결정국(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DDS)에서 담당

※ 장애결정국은 주 정부 기관임

④ 행정심판사무소(Office of Disability Adjudication and Review, ODAR)의 청문절차

- 연방 사회보장국 행정심판사무소는 전국적으로 100개가 설치되어 있고, 방문기관 4는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2곳 중 하나임
- 연방 사회보장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consideration)에서 신청이 부분 또는 전부 거부된 경우에 청문을 진행하게 됨
- 청문 담당자 : 연방행정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⑤ 이의신청위원회(Social Security's Appeals Council)의 심리절차

- 연방 사회보장국 이의신청위원회는 전국 6개소(Falls Church, Virginia, Baltimore, Maryland, Crystal City, Virginia)에 설치됨
- 행정심판사무소의 청문 결정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접 심리하여 결정하거나 행정심판사무소의 연방행정법판사에게 환송하기도 함

⑥ 미국지방법원에 소송제기

2. 기관방문 내용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17. 4. 17.(월) 14:00 ~
- 장소 : SSA 컨퍼런스룸
- 면담자 : 수석 판사,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여 명
- 면담내용
 -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불복 제도 및 운용 현황
 - 세부 절차 및 각종 구제 사례
 -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현황 및 성과 소개

□ 문답 내용

1. 미국 사회보장행정과 관련하여,
 - 연방사회보장국의 행정심판절차와 주·시 사회보장국이 수행하는 행정심판절차는 소관 업무 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건의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2. 연방사회보장국은 현장사무소(field office)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consideration) → 행정심판사무소(ODAR)의 청문 → 이의신청위원회(Social Security's Appeals Council)의 결정 등 다단계의 불복절차를 운용하는데,
 - ① 이러한 심급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심급제의 장점)
 - * 사회보장행정의 특수성 때문인지
 - ② 각 단계 별로 청구건수와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 ③ 각 단계는 필수적 절차인지

3. 각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 ①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② 원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4. 이의신청위원회(Social Security's Appeals Council)에서도 연방행정법판사가 청문을 주재하는 것인지
 - ① 캘리포니아 주 내에 이의신청위원회가 없다면 시민들은 어디 소재 이의신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관할)
 - ② 이의신청위원회에 청구인 뿐 아니라 원결정을 한 기관도 불복이 가능한지
5. 귀 기관 외에 연방 차원의 행정심판제도 중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연방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운용하는지
6. 귀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연방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선발방식과 지위는 어떠한지
 - ① 독립성 면에서 법원의 판사와 유사한지
 - ② 혼자서 청문을 주재하는지(배석제도 등 협의제도가 있는지)
 - ③ 업무 부담은 적정한지

7. 연방행정법판사 외에 직원(staffs)도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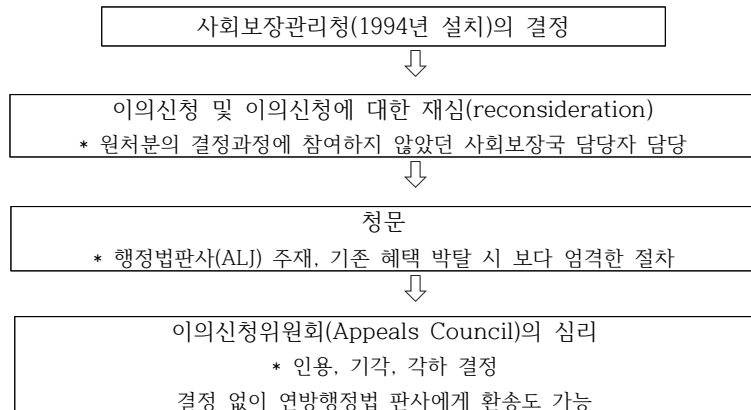
8.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영상청문은 활성화 되어 있는지
- 필요성은 무엇인지

□ 기타 사항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및 관련기관 현황, 각종 행정불복 절차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SSA 관련 자료를 수령

3. SSA 시사점

< 미국의 사회보장행정 프로세스 >



소송(미국지방법원)

□ 청문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보장

- 청문은 사법적 절차인 재결의 핵심단계로, 당사자는 모두진술, 증거제시, 증인소환,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결을 찬성하는 쪽에서 부담
- 청문이 끝나면 행정법판사는 증언, 증거자료 등 기록에 근거하여 재결의견과 그 이유, 적용법령에 대한 견해를 기록하고 최초결정(initial decision), 권고결정(recommended decision) 등의 결정
- 행정법판사가 재결의견과 이유 등을 작성하고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적 절차는 종료되고 기관의사의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으로 역할이 이전

□ 청문주제자의 중립성 보장

- 행정법판사의 임명은 각 행정청이 별도의 기관인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감독하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 명단을 순서대로 정하여 제공하고, 임명기관의 장은 후보리스트 중 상위 3명 중에서 선택
- 임명기관장은 행정법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나 포상을 할 수 없으며, 행정법판사의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only for good cause)에 한하고 해임에 앞서

행정법판사는 정형재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재결은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가 주관

- 행정법판사에 대한 사건할당은 가능하면 순환제로 배정하고, 행정법판사로서의 임무수행과 부합되지 않는 업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추천, 평가와 관계없이 인사관리처에서 지급

□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

- 1990년 국회는 APA(Administrative Procedure Act)를 개정하여 재결 및 규칙제정에 있어서도 ADR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청문 전 단계에서 정형재결을 거치지 않고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구 가능
- ADR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자발적인 것으로서 청문 전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되지 않거나 ADR절차를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단계로 이행
- 미국 환경행정분야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교섭 중 절차연장, 합의서 및 합의명령제안서에 지역행정관, 환경심판위원회의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 행정심판 절차에서 활용할 여지 많음

※ SSA 방문 모습



로스앤젤레스 사회복지국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1. 로스앤젤레스 사회복지국 개관

□ 개요

- 로스앤젤레스 사회복지서비스 담당기관
- 방문 사무소 소재지: 12860 Crossroads, Parkway South, City of industry, CA
- Director : Sheryl L. Spiller

□ 업무

- LA시 기관으로 시 차원의 사회복지제도 총괄
 - 천만 이상의 거주자들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제도들을 운영하며, 1년 예산은 39억 달러, LA 10개의 County 중 3개를 관할
 - 14,000명의 직원 및 40개의 사무소가 있음
 - 시 사회복지제도는
 - i) 경제적 지원
 - ii) 복지에서-근로로 프로그램(Welfare-To-Work Programs)
 - iii) 건강 관련 프로그램
 - iv) 기타 서비스로 구성됨

□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 ① CalWORKS

- 일정 소득 이하를 버는 미성년자를 둔 가족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

② Medi-Cal

-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들을 위해 의료보험혜택 제공

③ CalFresh

- 저소득 가계의 영양분 충족 및 식품구매를 위해 EBT카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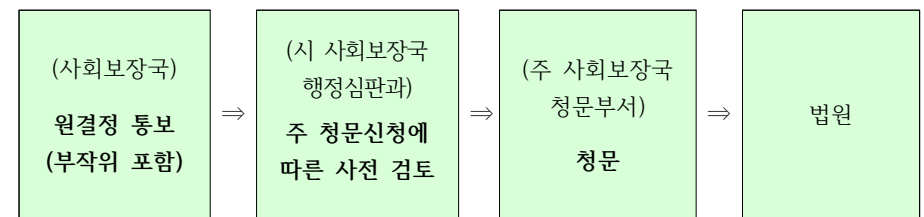
④ In-Home Supportive Services

-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어른 및 아이들에게 주거공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공

⑤ General Relief(GF)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어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 LA시 사회복지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방문기관 5

① 결정의 통보

- 결정에 대한 설명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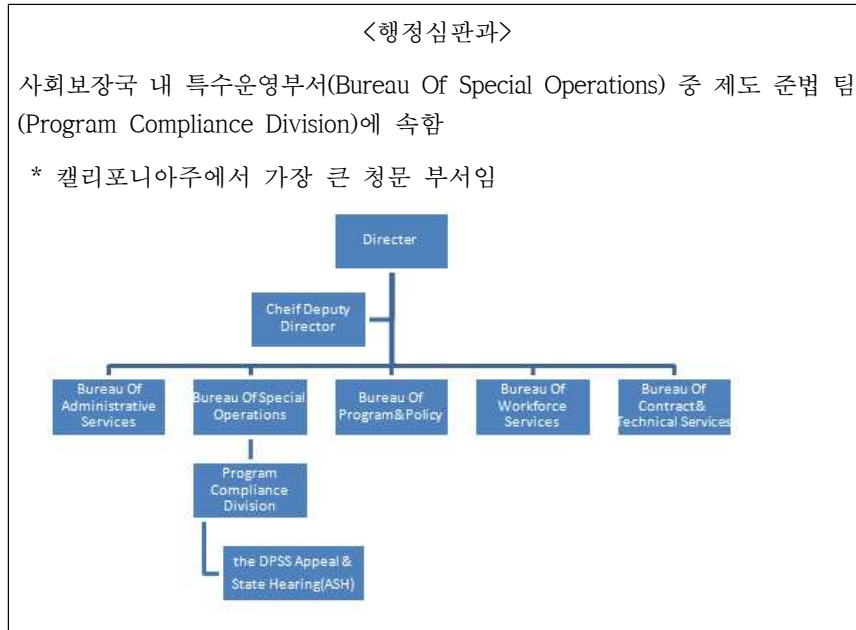
② 주 청문신청(Request a State Hearing)

- 주 청문은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

- 시 사회보장국 또는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에 제출

③ 시 사회보장국 행정심판과(Appeal & State Hearing, ASH)의 사전 검토

- 청구인이 원결정에 불복하여 주 청문을 신청하면 주 청문 개최 전에 시 사회보장국 행정심판과에서 원결정의 위법성을 사전 검토함



- 원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발견된 경우, 행정심판과는 청문 개최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사회보장국 담당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함
- 원결정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부를 대변하여 주 청문절차에 대비하게 됨

④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의 청문 절차 진행

- 주 사회보장국의 청문 부서에서 주 청문을 진행하게 됨
- 주 행정법관사(State 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청문을 진행
- 행정심판과는 시정부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게 됨
- 주 청문 부서는 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기일을 잡아야 하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2. 기관방문 내용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17. 4. 18.(화) 13:00 ~
- 장소 : DPSS 컨퍼런스룸
- 면담자 : 수석 판사, 주요 간부 등 약 20명
- 면담내용
 - LA시 사회보장국 운영 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소개
 - 행정심판과(Appeal & State Hearing, ASH) 소개
 - 캘리포니아주 행정법관사(State Administrative Law Judge) 면담

< DPSS 기관 방문 시간계획 >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Visit from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AC)
Republic of Korea
Tuesday, April 18, 2017
1:30 p.m. to 4:00 p.m.
 3833 South Vermont Ave, 4th Floor
 Los Angeles, CA 90037
 Appeals and State Hearing (ASH) Section Conference Room

AGENDA

1:30 p.m. Welcome & Opening Remarks	Patricia Bautista, Human Services Administrator I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ction,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1:40 p.m. DPSS Programs Brief Overview	Armen Gevorgian, Human Services Administrator I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ction,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2:10 p.m. Overview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the Republic of Korea	Lee Sang Min, Chairma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Yu Hyun Sook, Head of the Public Social Service Divisio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30 p.m. Appeals Process Overview	Dietrich Tucker, Human Services Administrator I Appeals and State Hearings Section,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3:00 p.m. Rehearing & Judicial Review	Jose Tello, Administrative Law Judge State Hearings Division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3:30 p.m. Questions and Discussion	
3:55 p.m. Conclusion	Patricia Bautista, Human Services Administrator I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ction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Translators: Michelle Chung and Mary Kim
Civil Rights Section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To Enrich Lives Through Effective And Caring Service"

□ 문답 내용

1. 시민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 주 청문을 신청하면 귀 기관의 행정심판과(Appeal & State Hearing, ASH)에서 항상 사전에 위법성 검토를 하는지
 - 이 단계에서 인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심사에 대해 독립성,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2. 주 청문을 신청하는 연간 건수와 주 청문의 인용률은 어떠한지
3. 시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나 그에 대한 청문절차도 별도로 존재하는지
4. 시민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송 전에 반드시 주 청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5. 소송에 비하여 행정부 내에서의 심사가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비용, 기간, 심사기준 등)
6. 주 청문을 주재하는 ‘주 행정법판사’의 선발방식과 지위는 어떠한지
 - ① 독립성 면에서 법원의 판사와 유사한지
 - ② 업무 부담은 적정한지

□ 기타 사항

- 우리나라 행정불복 절차 및 관련기관 전반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DPSS 관련 자료를 수령

3. DPSS 시사점

□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연간 39억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며 경제적 지원, 복지, 근로, 건강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을 단일 기관에서 담당
- 서비스의 제공과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기관에서 운용함으로써 권익구제의 신속성 담보

□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익구제

- 원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발견된 경우 청문개최 없이 담당부서에 바로 시정 요구
- 원결정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한 경우에만 시정부를 대변해 청문절차 준비

※ DPSS 방문 모습



1.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행정심판사무소 개관

□ 개요

○ 사무소 : 전국 100개

- 방문 사무소 : Los Angeles West 행정심판사무소

○ 방문 사무소 소재지: 121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 업무

○ 연방 사회보장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청문절차 진행

- 연방 사회보장국의 행정심판기관으로 연방행정법판사(ALJ)들이 사회보장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청문절차 진행 및 결정을 행함

-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임

- 미국 전역에 걸쳐 100개가 존재하며, 1,000명 이상의 연방행정법판사, 6,000명의 스태프가 있음

○ 분야

- 보전적 소득 보장제도(SSD), 사회 보장 장애보험제도(SSD) 관련 사건들이 주를 이루나, 은퇴 및 유족혜택과 관련된 사건도 다룸

○ 사무소가 부족하여 심리기일을 잡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림

□ 청문 진행 절차

① 청문 진행 전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은 사건 파일의 증거들을 열람 후,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 할 수 있음

- 청문을 청구할 때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청구 후에 제출하면 됨

② 청문 진행 중

- 원하는 경우 영상청문절차를 진행하기도 함

- 연방행정법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설명해야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청구인 및 청구인의 증인은 선서를 한 후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며, 청문은 모두 녹음됨

-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③ 청문 진행 후

-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연방행정법판사는 서면 결정문을 발부함

□ Los Angeles, West 행정심판사무소 현황 (방문기관 4)

○ 11명의 연방행정법판사가 청문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www.disabilityjudges.com 에 판사 이름 각하/인용/기각률 공개하고 있으며, 댓글로 판사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음

- 새로운 사건 수는 2,624건이며 심리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수는 9,451건, 영상청문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은 0%임(2017. 2. 7.자 기준)

- 평균 심리대기기간은 19.5개월이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621일이 걸림

- 인용률은 37%임(2017. 2. 7. 기준)

사무소	평균 심리대기기간 (Avg. Hearing Wait time)	평균 사건처리기간 (Avg. Processing Time)	연방행정법판사 1일 사건처리수	각하	인용	기각
Los Angeles West	19.5개월	621일	1.8	29%	37%	34%
캘리포니아 주	17.6개월	587일	1.7	21%	45%	33%
미국 전체	16.8개월	540일	1.7	21%	44%	34%

2. 기관방문 내용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17. 4. 17.(월) 14:00 ~

※ SSA, ODAR의 요청으로 일정을 변경해 면담 진행

※ 면담 진행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총괄 책임자 참석(새크라멘토)

○ 장소 : SSA 컨퍼런스룸

○ 면담자 : 수석 판사(Jennifer Horne), 주요 간부 등 약 20명

○ 면담내용

-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불복 제도 및 운용 현황
- 세부 절차 및 각종 구제 사례
-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현황 및 성과 소개

< ODAR 기관 방문 시간계획 >

<u>Agenda for visit with the South Korean</u> <u>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u> <u>Monday, April 17, 2017</u> <u>1:00 p.m. – 5:00 p.m.</u>	
• 1:00pm - 1:15pm	Welcome visitors/security, show restroom availability, et cetera
• 1:15pm - 1:30pm	General Staff Meeting (Topic: Introduction/discuss purpose of visit)
• 1:30pm - 1:45pm	Judge Horne (Topic: General Overview of the SSA – what it is)
• 1:45pm - 2:00pm	Operations (Topic: Where the cases start: General Overview of SSA Operations)
• 2:00pm - 2:15pm	Judge Horne (Topic: Where the cases end up: General Overview of ODAR)
• 2:15pm - 2:30pm	Break
• 2:30pm - 3:00pm	Judge Lishner (Topic: Making the Hearing Operation “real” - Staff Presentations on each step of the hearing process) ▪ Master Docket – Staff ▪ “Pre” hearing work – Staff ▪ Scheduling - Staff ▪ Hearings – LAW Judges ▪ “Post” hearing work – Staff ▪ Decision writing – LAW Decision Writers ▪ Closing and mailing – Staff
• 3:00pm - 3:30pm	Staff (Topic: Tools of the trade) ▪ IT presentation of a paper versus electronic case (with ARS demo) ▪ Demonstration of VTC hearing capability
• 3:30pm - 3:45pm	Break
• 3:45pm - 5:00pm	Roundtable with Judges, Decision Writers, management

□ 문답 내용

1. 미국 사회보장행정과 관련하여,
 - 연방사회보장국의 행정심판절차와 주·시 사회보장국이 수행하는 행정심판절차는 소관 업무 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건의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2. 연방사회보장국은 현장사무소(field office)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consideration) → 행정심판사무소(ODAR)의 청문 → 이의신청위원회(Social Security's Appeals Council)의 결정 등 다단계의 불복절차를 운용하는데,
 - ① 이러한 심급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심급제의 장점)
 - * 사회보장행정의 특수성 때문인지
 - ② 각 단계 별로 청구건수와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 ③ 각 단계는 필수적 절차인지
3. 각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 ①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② 원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4. 이의신청위원회(Social Security's Appeals Council)에서도 연방행정법판사가

청문을 주재하는 것인지

- ① 캘리포니아 주 내에 이의신청위원회가 없다면 시민들은 어디 소재 이의신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관할)
 - ② 이의신청위원회에 청구인 뿐 아니라 원결정을 한 기관도 불복이 가능한지
-
5. 귀 기관 외에 연방 차원의 행정심판제도 중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연방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운용하는지
 6. 귀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연방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선발방식과 지위는 어떠한지
 - ① 독립성 면에서 법원의 판사와 유사한지
 - ② 혼자서 청문을 주재하는지(배석제도 등 협의제도가 있는지)
 - ③ 업무 부담은 적정한지
 7. 연방행정법판사 외에 직원(staffs)도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지
 8.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영상청문은 활성화 되어 있는지
 - 필요성은 무엇인지

□ 기타 사항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및 관련기관 현황, 각종 행정불복 절차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SSA 관련 자료를 수령

3. ODAR 시사점

□ 심급제 운영에 따른 권익구제 신속성 저하

- 평균 심리 대기기간은 19.5개월,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621일로 불복사건의 해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익침해 사항도 발생 가능
- 불복 사건에 대한 심층적 심리 과정은 벤치마킹하되 신속성은 저하되지 않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

※ ODAR 방문 모습



Ⅲ 시사점 및 향후 계획

1. 연구 및 조사결과 분석

☐ 행정심판 제도 및 기구의 위상

- 미국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 제도는 연방정부부터 주정부, 시정부까지 단일화된 체계에 따라 운영되면서 기구 및 제도 운영상의 통일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획득하고 있음(OAL, SSA, ODAR)
- 특히, 사회보장분야 행정심판 시스템의 경우 최고 상급기관에서 하위 지방사무소까지 hierarchy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행정법판사의 선발 및 성과평가 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지위 및 처우를 보장하고 있음(SSA, ODAR)

☐ 행정심판의 완결성 및 전문성

- 행정심판 절차 상 양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재심 절차(심급제)를 운영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음(SSA, ODAR)
-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 증거제시, 증인소환,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청문 절차를 심리 과정상의 핵심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 심리 및 기타 행정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택근무 방식 등을 통한 유연한 전문인력 활용, 주요 분야별로 오랜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 위원 선임 등 업무와 역할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활용하고 있음(OAL, BOA)
- 양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는 사안의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2. 시사점

☐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 강화 필요

- 관련 법령 및 근거를 강화하고 산재해 있는 기능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
- 행정심판 위원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그에 부합하는 권위와 처우를 보장하며, 현행 pool제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부로 나누어 운영상의 안정성과 심도 있는 심리환경을 보장할 필요

☐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 필요

- 현행 단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절차를 개편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심급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
- 행정심판 직렬신설 및 전문관 확대를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영입, 교육 훈련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찾아가는 현장 증거조사 확대, 심리전 사전준비 절차 도입 등을 통한 서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회 보장, 조정 제도 및 간접강제 제도 도입·추진을 통한 재결의 역할 확대, 주요 재결례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권익침해 요인 사전예방 등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

3. 향후 계획

- ☐ 현재 추진 중인 2017년 행정심판 정책연구용역(주제: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방안 연구)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행정심판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
- ☐ 이번 출장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미국 행정심판 기관 등과 교류를 지속하고 행정심판 국제학술행사 등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 연구·추진

행정법사무소의 법령 검토 절차

-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Review Process -

- 주 소속 기관은 입법예고(notice publication) 후 1년 이내에 입법 기록과 법령안을 행정법사무소(이하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함
- 사무소는 30일간 행정절차법상 실체적 기준(substantive standards) 및 절차적 기준(procedural standards)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함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무소는 국무장관에게 ‘승인’된 법령안(approved regulation text)을 제출함
- 법령안이 주 법령집으로 발간됨
- 사무소는 입법 기록을 기관에 반납함
- 채택된 법령은 ① 법령에 시행일이 별도로 명시되거나, ② 사후의 일자가 요청되거나, ③ 이전 일자로 할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분기별’로 효력이 발생(effective quarterly)함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무소는 기관이 법령안을 철회(withdrawal)하지 않는 이상 입법을 ‘불승인’(disapproval)함

<철회한 경우>

- 기관은 1년간의 예고기간 내에 충분한 재검토 기회를 가짐

- 1년 예고기간 종결 전에, 기관은 문구 및 기록의 흠결을 바로 잡고 다시 법령안을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음

- 사무소는 다시 제출된 법령안에 대해 30일간 검토함

<불승인한 경우>

- 사무소는 불승인 결정을 하기 위해 7일간의 기간을 가짐
- 불승인 결정이 관보에 게재됨
- 불승인으로부터 120일 내에 기관은 법안 및 자료의 흠을 바로 잡아 다시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음
- 사무소는 다시 제출된 법령안에 대해 30일간 검토함

※ 불승인 시 별도로 주지사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일반 입법절차, Regular Rulemaking Process >

□ 개요

-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 내 각 부서, 사무소, 공직자, 위원회 등이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와 행정법사무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면제한 경우는 제외

- 행정절차법상 요건은 ① 공공에게 향후 강제력을 가질 법령의 제정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한 ② 행정법사무소와 법원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적정한 기록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됨
-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법령은 일반 또는 긴급 절차에 따라 수립됨

□ 일반 입법절차

- 입법부가 주 기관에 하위법령 제정권 부여한 경우, 경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행하여짐
- 입법예고의 발급(publication and issuance of notice)을 통해 입법 기록 개시
 - 입법예고문, 최초 제정 이유, 조문안 포함
- 최소 45일간 의견청취(45-day public comment period)
 - 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딸 공청회 개최, 의견을 받고 숙고함
- 의견청취 후 법령안 변경 여부에 따라,

- ① 주요 변경(major change)이 있는 경우

→ 다시 입법예고 및 45일간 의견청취 절차 개시

- ② 변경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이고 충분한 관련성 있는 변경이 없는 경우

- ③ 실질적이고 충분한 관련성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간의 의견청취 절차를 가짐(기관은 입법예고 및 법안변경 내용을 메일 송부)

→ 위 ②, ③의 경우

현행화 된 법안 개요, 최종 제정 이유(요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 첨부), 최종 조문안을 포함하여 **법령이 제정됨**

- 입법기록 폐쇄

◎ 일반적인 행정절차법 적용 면제사유

1. 사법부, 입법부의 기관
2. 번호인 규칙
3. 법률에서 이미 요건화한 정보의 기재 양식
4. 주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수립 기관의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여야 함
5. 회계, 조사, 시험, 감사의 기준
6. 법규정의 해석에 관한 준칙(only legally tenabl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law)
7. 요율, 가격, 가격표
8. 교통법규에 따른 교통 표지와 신호 등
9.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고, 주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긴급 입법절차, Emergency Rulemaking Process >

- ☐ 개요
 - 공공의 안녕,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해와 법령상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관은 긴급 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
 - 절차가 상당히 생략되고, 행정법사무소는 해당 법령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긴급 입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함
 - ☐ 긴급 입법절차
 - 기관은 필요한 시행일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적어도 17일간을 역산한 때로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함
 - 적어도 행정법사무소 제출 5일전에 긴급 예고(Emergency Notice)를 메일 또는 공고(post)를 통해 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면제됨
 - 위 예고는 ① 법령안, ② 긴급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됨
 - 적어도 시행일 10일 전에, 기관은 행정법사무소에 긴급 법령안을 제출해야 함(일정한 서류 및 양식 요구)
 - 검토기간 중 첫 5일간 일반인은 사무소에 의견(comments)을 제출할 수 있음
 - 기관은 10일간의 사무소 검토기간 중 8일째까지 위 의견제출에 대한 반박(rebuttal)이 가능함
 - 제출 후 10일째 되는 날짜가 사무소의 결정 기한이고, 승인 되는 경우 국무장관에 대한 제출 기한이기도 함
 - 승인되면 법령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날 시행되어 180일간 효력이 있음
 - 기관이 향후 영구적인 법령을 도입하기까지 2회에 걸친 90일간
- 의 반복 채택이 가능함
- 법령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은 정규 예고 및 의견청취 기간(regular notice and comment period)을 수반한 일반 입법절차(Regular Rulemaking Process)를 거쳐야 함

1. 건축조사부 및 도시계획부 (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 and Planning Department) 64건

- 35건은 콘테스트 프로모션사가 제출한 간판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룬 것임. 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합법화 할 것을 구함
- 29건은 이웃주민이 자신의 재산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타인의 건축허가를 다투는 건임
 - 주택 증축이나 테크 설치로 이웃집 창 내부가 노출되거나, 조망권 침해 또는 대기차단 여부가 문제됨
 - 이들 중 8건은 임차인이 주거지 철거에 대하여 청구
- (결과) 위원회는 83%(53건)를 기각하고, 15.5%(10건)는 인용하였는데 이중 9건은 기본 허가에 조건을 부여한 것임
 - 1건(1.5%) 각하 건은 청문 후 결정 전에 허가가 취소된 사건임

2. 건축조사부 단독 (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 only) 15건

- 13건은 건축, 전기, 배관허가 발급에 기초하여 제기되었는데, 이중 9건은 거주지의 철거를 다투는 임차인에 의한 것임
- 1건은 무허가 작업에 대하여 건축조사부가 부과한 벌칙을 다투는 건임
- 1건은 12층 사무빌딩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조사부가 발급한 환경영향 평가서 내용을 다투는 건임
- (결과) 위원회는 이중 67%(10건)를 기각하고 27%(4건)를 인용했는데 그중 1건은 조건부였음
 - 남은 6%(1건)은 위원회에 계속 중인바, 조정을 위해 구조적인 계획을 건축조사부에서 검토하도록 시간을 부여한 것임

3. 구역행정관 (Zoning Administrator) 43건

- 24건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다투는 것인데, 이중 22건은 예술대학회에서 제출한 것임
- 13건은 구역설정특례의 부여 및 거부를 다투는 것임
- 4건은 측량서(Letters of Determination)를 다투는 것임
 - 측량서는 어느 도시계획 규정 및 동 규정이 특정 주소지의 상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한 문서임
 - 예) 어느 재산의 법적 용도가 무엇인가, 테크들이 뒷마당의 평균에 비추어 고려될 수 있는가, 또는 알코올이 특정 구역에서 판매될 수 있는가 등
- 1건은 허가 유예 발급에 대한 구역행정관의 요청을 다투는 것임
- 1건은 허가 철회를 무효화 하는 구역행정관의 요청을 다투는 것임
- (결과) 위원회는 구역행정관의 결정에 대한 심판의 93%(40건)를 기각하고, 2%(1건)은 인용, 5%(2건)는 속행함

4. 샌프란시스코 공공부서들 (San Francisco Public Works) 36건

- 19건은 별목허가와 관련되는데, 16건은 이러한 허가의 발급을 다투는 것이고, 3건은 허가 거부를 다투는 것임
- 11건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장비의 설치를 위한 무선인터넷 박스 설치 허가의 발급을 구한 것임
- 3건은 이동음식시설허가에 관한 것인데, 2건은 이러한 허가의 발급을 다투는 것이고, 1건은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임
- 3건은 사업체와 식당의 앞면에 있는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데 대한 허가에 관한 것인데, 2건은 허가의 발급을 1건은 이러한 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다투는 것임
- (결과) 위원회는 55.5%(20건)를 관련 사건을 기각하고, 36%(13건)는 인용했는데 이중 7건은 조건부였음. 2건(5.5%)은 속행하고 1건(3%)은 기각함

5. 도시계획 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5건, 전부 기각

- 3건은 하이드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규정 309조에 따라 부여된 예외 조항을 다툼 것임
- 1건은 골든 스테이트 위리어 경기장과 이벤트 센터 계획을 위하여 도시 계획 법규 321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무실 배치를 다툼 것임
- 1건은 알칸사스의 주택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법규 329조에 따라 부여된 대규모 도시계획허가를 다툼 것임

6. 기타

- 예술위원회
 - 허가신청자가 심판청구한 거리예술가 증서의 거부가 타당하다고 결정
- 보건 부서
 - 허가신청자가 심판청구한 담배소매점 설치의 거부가 타당하다고 결정
- 위락시설 위원회
 - 골든 스테이트 위리어 경기장과 이벤트 센터를 위한 위락시설 허가의 발급을 다투는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
- 역사 보존 위원회
 - 역사구역에서의 버스운행계획과 연계된 작업허가인증의 발급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기각
- 시 교통기관 - 택시 등 서비스 부서
 - 유색기준허가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참고 4

B0A 소송 사건 케이스

1. AIDS Healthcare Foundation, Inc.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계류 중(pending)

① 에이즈 헬스케어 재단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상업지구에 대한 소매점 규제 목적의 시 임시구역제한 실행 및 ② 위 재단에 대한 건축허가 중지조치에 불복하는 심판에서 위원회는 2014. 8. 21. 각하 결정하였고 이를 다투는 연방소송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위 임시구역제한에 따르면 재단은 허가중지조치가 취소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심판에 소익이 없다(moot)고 보아 각하하였다. 2015년 1월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재단의 청원을 각하하는 시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청구변경의 여지를 부여하였다. 재단이 청구를 변경하자 시는 또 다른 각하 주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재단은 약국에 관한 조건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본 소송을 보류해 줄 것을 청구했다. 시가 이에 동의 하였다. 조건부 사용허가는 2016년 1월에 거부되었고, 재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 거부에 대한 별도의 소 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새로운 각하 주장에 따라 사건 계류 중이다.

2. Contest Promotions, LLC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신소(new)

이 소송은 옥외 상업간판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법규의 위헌성이 문제된 건이다. 신청인은 시가 간판의 3분의 2는 주된 사업에 관한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 도시계획 법규의 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현재 설치된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2016. 1. 20. 위원회는 도시계획부서의 35건의 간판허가신청에 대한 거부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2016년 7월 이 사건은 관련 사건과 병합되었고, 서면제출 및 청문이 진행 중이다.

3. Angela Cross v. San Francisco Board of Appeals

각하(dismissed)

유레카 거리 소재 임차인이 그녀가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 및 배선 허가를 다루는 2건의 심판청구 기각한 2015. 1. 7. 자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소장에 필수 당사자(부동산 소유자)의 기재 누락하였고 변론에서 흠결을 보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6. 3. 28.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되었다.

4. Robert E. Gonzales v. San Francisco Board of Appeals

계류 중(pending)

펜실베이니아가의 빌딩 건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2015. 8. 26. 자 결정을 다루는 소송이 인접주민에 의해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제기되었다. 2016. 1. 6. 법원은 도시계획 법규나 거주지 설계 지침이 위반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건축업자와 합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절차의 유예를 요청했다. 현재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 Tu Lam v.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at al.

계류 중(pending)

램씨의 택시운전면허와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2009. 5. 29. 자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9. 12. 7.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취소를 보류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된 영장 청구(writ petition)에 대한 청문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취소가 보류되지 않았으므로 시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로서의 소추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

6. Mission Bay Alliance, et al. v. Office of Community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at al.

항소 중(on appeal)

시의 미션 베이 구역 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경기장과 이벤트 센터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승인을 취소시키려는 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1건은 환경평가 승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건은 위탁시설 허가 및 사무소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계획 권한 부여를 다루는 것인데, 양자 모두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016년 7월 고등법원에서 각각의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2016년 8월 사무소 배치에 대한 주장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들에 대한 항소가 있었다. 항소에 따른 청문 일정이 11월 중순에 잡혔고, 결정은 2017년 초에 있을 예정이다.

7. 1049 Market Street, LLC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Federal Court)

1049 Market Street, LLC v. Aaron Miller, at al.,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S. F. Superior Court)

계류 중(pending)

6층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2건의 소송이 1건은 연방법원에, 다른 한 건은 주 법원에 제기되었다. 이는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건물로의 변경 허가에 대한 구역행정부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건물 거주자들이 청구한 심판을 인용한 2015. 4. 8. 자 위원회 결정을 다루는 것이다. 주의 사건은 CEQA에 따라 기득권이론 및 몇몇 헌법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연방사건은 연방 헌법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 소송 모두 같은 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연방법원은 어떠한 연방법상 쟁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주법원으로 하여금 지역의 토지이용법상 쟁점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연방소송은 주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된 상태이다.

2016년 4월 시는 주 소송에서 허가의 효력을 적정히 평가했는지와 관련된 관할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법원은 구역

행정관이 부동산의 주된 용도인 사무소 용도가 폐기되었는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가 다시 심리하도록 해당 부분을 위원회에 환송하였으나, 동 쟁점의 해결에 있어 조건부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최근의 입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선택권을 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원고는 주 법원에 2건의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헌법상 수용조항 위배와 기득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사실심에서 즉시 기각되었다. 두 번째 소송은 주거지의 철거를 위해서는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의 입법을 다투는 것이다.

8. Oswald & Seley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결정(decided)

그린 거리 지상 건축계획의 이웃주민이 2층의 단일 가구 거주 빌딩에 3, 4 층을 증축하는 ‘부지 다양화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2015. 2. 11.자 결정(by default, 결석)을 다룬 사건이다. 고등법원(Superior Court)은 구역행정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21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사건은 항소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이후 항소를 취하(dismiss)하였고,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다.

9. Mica I. Ringel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보류(stayed)

이 소송은 무엇보다 구역행정관의 합법화 통보에 대한 청구기간 도과 심판 청구를 기각한 위원회의 2013. 8. 14.자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위 통보는 포트레로가에 위치한 빌딩의 ‘인터넷 서비스 교환’ 용도를 합법화 하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부지가 매각되었고, 새 소유자는 같은 장소를 인터넷 서비스 교환소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은 소의(moot)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류 중이다.

10. San Francisco Coalition for Children’s Outdoor Play,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결정(decided)

이 소송은 위원회가 2012. 9. 13. 정당하다고 결정한 해안 구역 허가 관련 환경평가를 다투는 것이다. 허가는 금문교의 서쪽 끝 경기장의 재건축 방안과 관련되어 행하여졌다. 고등법원(Superior Court)은 환경평가 및 2013년 12월에 있는 모든 시의 승인을 지지하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2015년 9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이를 수긍했고, 2016년 1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고등법원(Appellant Court) 결정의 출간에 관한 요청을 기각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11. 765 Market St. Residential Owners Assoc., et al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합의종결(Settled)

이 사건은 유바 부에나 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주거빌딩 건설을 위한 706 미션 거리-멕시코 박물관을 승인한 시의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주장 중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그림자 규제 계획 법규 제295조에 따라 내려진 도시계획 위원회 발의에 관한 행정심판 심리 요청을 거부하는 2013. 7. 31.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가 도시계획 법규 제309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부분도 다투어졌다. 신청인들은 사실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합의가 성립했고 항소는 2016. 3. 10. 각하되었다.

12. Andrei Urazov & Philip Brady v.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et al.

결정(decided)

이 소송은 포크 거리에 수평,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허가발급을 지지한 위원회의 2015. 6. 3.자 결정을 다투는 인접지 소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2016. 5. 26.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위원회가 문제가 된 위

허가를 정당하다고 본 데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신청인들은 이 명령을 다룰 권리를 포기하여 동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 되었다.

13. Taffi Vaswuez and Jimmy Zafur v. San Francisco Board of Appeals

일정 제외(off calendar)

트웬티즈가 소재 건물 임차인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요청을 거부한 2015. 8. 5.자 위원회 결정을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은 관련 증거와 행정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3. 3. 법원의 일정표에서 제외되었다. 신청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진행되던 퇴거소송은 합의가 성립되어 각하되었다.

참고 5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행정절차



COUNTY OF LOS ANGELES GOVERNANCE

- ❖ The major levels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re
 - Federal (National)
 - State (there are 50 states within the United States)
 - County (there are 58 coun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 City (there are 88 cities within the County of Los Angeles. The City of Los Angeles is the largest, and the City of Long Beach is the second largest)
- ❖ All are governed independently
- ❖ Los Angeles County has 10.4 million people, and has the largest population of any county in the United States
- ❖ Los Angeles County is govern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made up of five elected officials, each representing a Supervisorial District of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 ❖ The Supervisors have executive, legislative and quasi-judicial powers for the County, and meet once a week
- ❖ Terms of office are four (4) years, and each Supervisor may run for a total of three (3) terms
- ❖ Other elected Los Angeles County officials are the Sheriff, the District Attorney, and the County Assessor. All are elected by voters in the County at large
- ❖ Los Angeles County provides services that include
 - assessing and collecting property and other taxes
 - administering elections
 - maintaining a vital records system (birth and death certificates, etc.)
 - administering the welfare system, child adoptions and foster care
 - administering some criminal justice system activities and programs
 - providing police, fire and other services to smaller cities in the County under contract. Such cities are called "contract cities"
 - maintaining streets and delivering other services that are usually provided by cities to one million people who live in 140 unincorporated areas (areas that are not cities) in the County
- ❖ The approved budget for Los Angeles County for the July 1, 2016 – June 30, 2017 Fiscal Year is \$28.7 billion. The largest allocations are to Health (\$8.58 billion, 30.1%); Public Protection (\$8.77 billion, 28.4%); and Public Assistance (\$7.068 billion, 24.8%). The great majority of revenues are mandated to be spent in designated programs. Less than 15% of budget expenditures are discretionary (actually determin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September 2016



SANDRA J. AUSMAN
CHIEF OF PROTOCOL

LOURDES SAAB
DEPUTY CHIEF OF PROTOCOL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PROTOCOL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ROOM 375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213) 974-1307 • FAX (213) 921-2664
<http://cso.lacounty.gov>

Board of Supervisors
HILDA L. SOLIS
First District

MARK RIDLEY-THOMAS
Second District

SHEILA KUEHL
Third District

JANICE HAHN
Fourth District

KATHRYN BARGER
Fifth District

LOS ANGELES COUNTY INFORMATION BRIEF

Geography

Los Angeles County covers 4,084 square miles and is the most populous County in the United States, with a population larger than 40 states. It has a land area larger than some small countries (including Jamaica and the Bahamas), and is exactly the size of the big island of Hawaii. There are 88 cities and more than 100 unincorporated areas in the County. The City of Los Angeles is the largest city, and Long Beach is the second largest.

Demographics

There are more than 10 million residents, who represent so many different ethnicities that Los Angeles County is believed to be the most culturally diverse area in the United States, and, perhaps in the world. In public schools, classes are taught in 90 languages. About 49% of the population is Hispanic, 27% are non-Spanish-speaking Caucasians, 13.8% are Asian-Pacific Islander, and 8.3% are African American and 2.2% other races. About 76.6% of the population have a high school diploma or more, and 29.7% have a bachelor's degree or more.

Economy

If Los Angeles County were a nation, its economy would be among the 20 biggest in the world. It is the largest manufacturing center in the United States, providing 359,100* jobs in 2015. That year the industries clusters providing the largest number of private sector jobs (from 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L.A. Stats 2014" and "Business Scan" November 2015 *) included:

Health Services	664,300*
Leisure & Hospitality	436,700
Professional Services	323,400*
Real Est., Construction, Development	203,100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121,800*

In the County is the busiest container seaport complex in the United States, the Port of Los Angeles and the Port of Long Beach, which are adjacent to each other. In 2014 the two combined made up the world's tenth busiest container port complex, after Shanghai, Singapore, Shenzhen, Hong Kong, Ningbo, Busan, Guangzhou, Qingdao and Dubai.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is the sixth busiest airport in the world, serving nearly 66.7 million passengers in 2013, and processing more than 1.9 million tons of air cargo valued at more than \$91.6 billion. Top commodities included civilian aircraft, engines, and parts; unmounted diamonds; computer chips; mobile and landline telephones and parts, and computers.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are a cornerstone of the County's economy, employing more than half the work force.

County Government

The County administers the welfare system, child adoptions and foster care, land use, law enforcement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vides health and mental health care, and is one of only a handful of coun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administers its own system of hospitals. It assesses and collects property and other taxes, and is responsible for all vital records from birth to death, the Coroner, and administering elections, as well as for disaster preparedness. It provides fire and law enforcement services for unincorporated areas and contract cities.

With more than 108,000 employees, the County of Los Angeles is the largest employer in its County. Its 2016-17 Fiscal Year approved budget was \$28.7 billion.

The County is govern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made up of five elected officials each of whom represents one-fifth of the population. The Supervisors have executive, legislative and quasi-judicial powers for the County, and meet every week. On March 5, 2002, voters passed a measure limiting Supervisors to three (3) 4-year terms in office. Other officials – elected by the entire County – are the Sheriff, the District Attorney, and the County Assessor.

Arts & Culture

The Board of Supervisors of Los Angeles County is a strong supporter of the arts. The County owns the Music Center of Los Angeles, including Disney Hall;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and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Natural History. Through the County Arts Commission it provides grants for administration and programs to more than 200 arts organizations of all sizes.

Los Angeles County is an international cultural destination because of these and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the Getty Museum and Getty Villa, the Norton Simon Museum, the Huntington Library, the Autry National Center,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of course, the world-famous complex of motion picture, television and music production centered in Hollywood and other areas throughout the County. Los Angeles County is also a leading art market, with more than 150 art galleries that feature contemporary art.

Education

Los Angeles County and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are justly renowned for a unique system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offer widesprea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t every level, from career training to advanced scholarship. Some of the most well-known schools located in Los Angeles County are UCLA, USC, Pepperdine University and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There are numerous other institutions that offer training and higher learning in fields from acupuncture to zoology.

LOS ANGELES COUNTY PROFILE is published by the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Protocol.

The County's Office of Protocol was established by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n 1982 to serve as liaison between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the Los Angeles Consular Corps.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95 countries represented in Los Angeles County,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Consular Corps in the world.

The Office of Protocol works to promot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ultural awareness, and opportunities for business, trade and tourism between Los Angeles County and foreign countries. Additionally, the Office of Protocol ensures that appropriate hospitality is extended to visiting foreign dignitaries, and that proper protocol is observed for these visit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PROTOCOL AT 213/974-1307

Sandra Ausman - Chief of Protocol Lourdes Saab - Deputy Chief of Protocol
Glenda Wina - Director of Special Projects Cindy Mendoza Torres - Program Specialist
Evelyn Duong - Senior Secretary III

N:\WP\Office of Protocol & County Information\LA County Profile & Overview\LOS ANGELES COUNTY PROFILE.doc

08/09/16 gw